

정정보도문의 제목에 관하여

Hamburg 고등법원 1987. 8. 10 결정

- 3W 88/87 사건-

적용법조

Hamburg 주 언론법 제 11 조.

판결요지

1. 정정보도문의 제목으로서는, 예를들어 「보충적인 진술」이라는 표현은 사용될 수 없다.
2. 반박문에 있어서의 사실상의 주장은, 원래의 기사를 인용함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표현된 주장에 반드시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.

판결이유

원문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, 위 원문기사에 대한 그의 반박기사를 「정정보도문」이라고 표시하여야 하고,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의 정정보도문의 인쇄를 함에 있어서 「보충적인 진술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하는 점에서 당원은, 1 심의 결정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.

그러나, 법원이 예외적으로, 그리고 법원 스스로,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인 「정정보도문」이라는 표현 대신에 위와 같은 「보충적인 진술」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.

어쨌든, 이 사건 피신청인의 정정보도문 게재의무는 이미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, 존재하지 아니한다. 왜냐하면,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은 그 서론 부분 이후의 첫번째 문단에서 원문기사의 내용을 반복함에 있어서 이미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. 즉, 정정보도문은 위 위치에서 「W 회사가 제조하고 있는 들쥐 박멸기구인(Vole-Stop)은, 위와 마찬가지로의 목적으로 역시 W 회사가 이전에 제조하였던 기구인 과그 기능에 있어서 전혀 동일하다고 주장되고 있다」고 기술하는 잘못이 있었던 것이다. 신청인이 제조하는 위 2 가지 기구의 효과가 동일하다는 주장은 원문기사에 있어서 행해진 바가 전혀 없었고, 다만, 위 2 개의 제품의 사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행해짐으로써, 그와 같은 인상이 심어지고 있었던 것이다.

그밖에도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은, 피신청인의 정정보도문 게재 의무를 배제시키는 다음과 같은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. 즉, 위 정정보도문의 2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은, 신청인이 그의 반박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의 「동일한 효과」라는 주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, 오히려 실제에 있어서는, 이미 1 심 법원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, 「Vole-Stop」이라는 그의 기구(상품)를 영업적으로 선전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.

현재 제조·판매되고 있는 제품인 「Vole Stop」이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모든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의 문제는, 신청인의 위 2가지 제품의 효과의 동일성에 관하여 원문기사가 주장하였고 그러나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는 것이다.

어쨌든 위 정정보도문에는 위와 같은 결정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, 당원은, 신청인의 위 의사표시를 변경하거나 또는 잘못된 점만을 삭제할 가능성마저도 가질 수 없게 되었다. (당원 Afp 80/104 판결참조)